
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9. 26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년 9월 12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1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9. 2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되어 일부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일괄 개정대상 조례
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12개 조례
- 주요 개정사항
 -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된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 개정

· 정비내역

조례명	정비사항	비고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	• 행정자치부→행정안전부 • 행정자치부장관→행정안전부장관	안 제2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	• 행정자치부장관→행정안전부장관	안 제3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	• 행정자치부장관→행정안전부장관	안 제5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• 행정자치부장관→행정안전부장관	안 제6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 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	• 중소기업청장→중소벤처기업부장관	안 제7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• 중소기업청→중소벤처기업부	안 제8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• 중소기업청장→중소벤처기업부장관	안 제9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월케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	• 보건복지가족부장관→보건복지부장관	안 제10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	• 보건복지가족부장관→보건복지부장관	안 제12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	• 보건복지가족부장관→보건복지부장관	안 제13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	• 지식경제부령→산업통상자원부령	안 제4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	• 지식경제부장관→산업통상자원부장관	안 제11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묵)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되어 일부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안 제2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5조 제3항 중

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하고,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였으며,

- 안 제3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」 제39조 제2항제4호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」 제30조 중 “지식경제부령”을 “산업통상자원부령”으로 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3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,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나목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 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였으며,
- 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9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항제2호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조의2 제5호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 각각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하였으며,
- 안 제10조, 안 제12조, 안 제13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실천협의회 조례」 제2조제1호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 중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하였으며,
- 안 제11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나목 중 “지식경제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으로 하였음.

○ 검토결과, 시의 적절하며, 기타 상위법령 및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6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9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이 되어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일괄 개정대상 조례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12개 조례

나. 주요 개정사항

-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된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 개정
 - 행정자치부 → 행정안전부
 - 지식경제부 → 산업통상자원부
 - 보건복지가족부 → 보건복지부
 - 중소기업청 → 중소벤처기업부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정부조직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 제외 대상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8.24. ~ 8.31. / 7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하고,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제4호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 중 “지식경제부령”을 “산업통상자원부령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5호 중 “중소기업청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”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지식경제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</p> <p>①、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<u>행정자치부가</u> 정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른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</p> <p>①、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행정안전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)</p> <p>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, 성과 평가결과,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<u>행정자치부장관</u>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<u>행정자치부장관</u>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.</p>	<p>제30조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----- -----.</p>

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(경영평가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의 <u>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</u> 하는 기관</p>	<p>제39조(경영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행정안전부장관</u>----- -----</p>

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30조(직무발명상황보고)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<u>지식경제부령</u>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30조(직무발명상황보고) ----- ----- ----- <u>산업</u> <u>통상자원부령</u>----- -----.</p>

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~ 8. (생략)

② 삭제

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④ (생략)

제91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삭제

2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행정안전부장관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91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

----- 행정안전부장관 -----

-----.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사회적경제 조직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를 생산, 교환,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<u>행정자치부장관</u> 및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</p> <p>다. ~ 마. (생 략)</p> <p>3. ~ 7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----- -----</p> <p>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)</p> <p>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중소기업청장이</u> 정하는 전통상점가(이하"전통상점가"라 한다.)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제8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</u>----- -----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**<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>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"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"(이하 "창업투자회사"라 한다)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<u>중소기업청</u>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.</p> <p>6. ~ 9. (생략)</p>	<p>제2조의2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----- ----- ----- ----- <u>중소벤처기업부</u>----- -----.</p> 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
**<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>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창업지원센터의 운영, 입주승인, 창업지원센터 입주자(이하 "입주자"라 한다)의 지원, 졸업, 퇴거 및 사후 관리에 관하여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중소기업청장</u>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.</p>

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장애인보장구”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·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·보조기 및 그 밖에 <u>보건복지가족부장관</u>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.</p> <p>3. 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보건복지부장관</u>----- -----.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

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녹색제품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(이하 “상품”이라 한다)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,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<u>지식경제부장관</u>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</p> <p>다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**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신·구조문대비표〉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조정한다.</p> <p>1.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<u>보건복지가족부장관</u>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u>보건복지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**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신·구조문대비표〉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<u>보건복지가족부장관</u>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<u>보건복지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